

광주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1가단109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변 론 종 결 2021. 9. 15.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7. 1. 13. 접수 제1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7. 1. 12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변경된'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피고 3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피고 1, 2, 4, 5, 6, 7, 8, 9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정혜원

별지